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55
----------	-----

2017. 12. 22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연철흙 의원 등 7명
- 나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- 라. 상정일자 : 2017년 12월 14일
 -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연철흙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여 지역의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도민이 활발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충청북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(안 제4조)
-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~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호)

- 위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민이 문화를 활발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충청북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(안 제4조)과 지원경비의 관리(안 제5조),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10조)으로 상위법령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임.
- 도민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뿐만 아니라 도내에 소재한 사립박물관,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755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흙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발의자 : 연철흙, 최광옥, 박한범,
박봉순, 이연구, 김영주,
이숙애

1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여 지역의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도민이 활발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충청북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(안 제4조)
-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
- 다. 입법예고 : 2017. 11. 7 ~ 11. 17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·육성하여 문화·예술·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박물관 및 미술관”이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“관련법인·단체”란 「민법」, 「상법」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지원)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·운영하는 사람 또는 관련 법인·단체(이하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시·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
3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 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
4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 행사에 필요한 경비
5.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여 받거나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

-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·관리 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2. 제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·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 1.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
 2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3. 관련법인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제8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- 제9조(간사 등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-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- 제10조(위원의 해촉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
 2. 질병·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4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
제11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

제13조(설립과 육성) ①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, 문화유산의 보존·계승 및 창달(暢達)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자료의 양여 등)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·양여(讓與)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「국유재산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또는 「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·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·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(경비 보조 등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

요한 경비를,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.

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